

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9년 4월 18일
도시교통위원회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: 2019 - 17
- 제 안 자: 김선경 의원 외 10명
- 제안일자: 2019년 4월 4일
- 회부일자: 2019년 4월 16일
- 상정일자: 제26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
제1차(4월 18일) 회의 심사

2. 개정이유

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영 및 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에 따라 기금 명칭변경 (안 제1조)

- '옥외광고정비기금' ⇒ '옥외광고발전기금'

나.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 삭제(안 제2조제7호)

다. 기금심의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해촉 규정 신설(안 제6조의2, 제6조의3)

라.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
(안 제2조~제6조, 제8조~제10조, 제1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제6조의2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(2019. 4. 8. ~ 2019. 4. 15.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(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건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 내용

가. 안 제1조: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명칭 변경.

- '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' ⇒ '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'

나. 안 제2조제7호: 기금의 재원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.

- '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'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적절하게 삭제

다. 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: 위원의 임기¹⁾를 명확히 하여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유발 방지.

- 위촉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
-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규정 신설

라. 안 제6조의2, 제6조의3: 안건 심의의 객관성 확보와 공정성을 강화.

- 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·해촉²⁾ 규정 신설

마. 안 제2조부터 제13조: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'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.

1) 5페이지 관계 법령 참조

2)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8조(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) ① 위원회는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와 조례·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·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30조(부패유발요인의 검토)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·예규·고시·공고와 조례·규칙(이하 "법령등"이라 한다.)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·검토(이하 "부패영향평가"라 한다.)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.

- 제척 -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.
- 기피 -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여 안건 심의·의결에서 배척하는 것.
- 회피 - 해당 위원 스스로 위원회에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.

-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 제한, 제척·회피·기피·해촉 규정 신설 등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관계 법령

□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<개정 2016. 1. 6.>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 <개정 2016. 1. 6.>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

<개정 2016. 1. 6.>

□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「위원의 임기 및 신분 규정」

- 위원회의 전체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 위원 임기 등 위원 개개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따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.
-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되,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“연임할 수 없다.” 라고 하거나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” 고 규정한다.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.